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8. 30(금) 15:00 ~ 17:4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2019년 8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8개의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위원 10인 중에서 10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 회의 결과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54차 위원회에서는 2개 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획조정부의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의결 되었구요. 공연창작부에서는 잔여예산을 활용한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 및 뮤지컬 대본공모 사업 추진계획(안)이 수정의결돼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혹시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중장기전략(안)입니다.

이 안건은 비전2030TF 팀장을 겸하는 전효관 사무처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2030비전·전략체계(안)입니다.

이번에 문체부의 문화비전2030도 있었고, 새예술정책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전략 체계를 만들고자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위원회의 미래상을 설정해서 운영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의제’ 기구 전환 취지와 정신을 현장 지향적이고 기관의 미션에 포인트를 주자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화두가 된 것은 현장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정관을 보시면 비전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8월부터 의견수렴과 직원 보고회, 설문조사, 미래전략소위원회 및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서 초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위원장 취임과 더불어서 전략마련을 추진했고, 2019년 6월에는 2차 안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6대 전략목표와 20대 전략과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7월에 본격적으로 TF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전략체계(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사업계획(안)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비전2030 제3차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과제는 축소하고 집중하는 형태로 해서 마련했고요. 최종적으로 목표는 8페이지를 보시면 3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0 비전·전략 체계 수립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역할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를 “세상을 바꾸는 예술”로 요약했고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을 “예술을 가꾸는 ARKO”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30’이라는 것이 중장기 전략임에 따라 현재의 사업들을 전부 다 비전체계에 녹이다보니 기존의 체계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사업들을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미래과제와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보자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구의 전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가치나 사업소요의 다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기관이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환경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비전과 전략체계를 잡았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9월 중에 직원과 간부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하고요. 일정으로는 9월 30일이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저희가 내·외부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는 것들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비전은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가꾸는 ARKO”라고 했고요. 핵심가치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책임’으로 나뉘어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존중한다는 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전략목표와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체계만 설명 드리면,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확장”이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래 논의된 바와 같이 지원구조를 재정립하고 현장 맞춤형 사업의 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창작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고 해서 실험성과 다양한 예술을 개척하는 것을 두 번째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자고 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예술을 공유하자는 것을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넣었고요. 예술 공유에서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항목들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 운영”으로 잡았습니다.

기관운영체계를 혁신하자는 것과 현장 협력형 기관을 운영하자는 전략과제를 넣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과 조직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에서는 협치형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술 공론장 등을 형성하자는 과제를 세웠습니다.

10페이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문구는 저희 정관에 있는 내용들을 비전 문구로 잡았고요. 핵심가치로는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경청하고 상호존중을 한다는 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책무를 다 한다는 점 등 3가지를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책임으로 잡았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과제1을 보시면 창작기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지원구조를 재정립하고

방식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형태를 모색하는 것 그리고 심의 유형을 목적에 맞도록 모색하는 것과 실험적 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첫 번째 세부과제로 삼았습니다.

현장 맞춤형 사업체계 마련의 항목에서는 예술현장의 요구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술가가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부과제3에서는 공간 활성화의 내용인데요.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예술현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략과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지평 확대’는 세부과제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깊이를 구하는 것과 넓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부과제에서는 예술의 실험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예술 지원과 예술가 교류, 그 다음에 상호 자극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양한 예술영역 개척에서는 예술 영역 외 새롭게 부상하는 것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과 예술의 실현을 위한 매니지먼트나 유통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전략과제3으로 봤습니다.

가치 확산을 위해서 시상식이라든지 예술나무운동을 다각화 한다든지 후원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략과제3 세부과제1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부과제2에서는 미래 사회 변동에 대비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것과 지역소멸, 노령화, 다문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예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예술 지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세부과제3입니다.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을 내용으로 해서 예술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외부와 잘 논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토대로 삼아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략과제4입니다.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세부과제1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용권 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향유의 사회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세부과제1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부과제2에서는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창조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형 SOC에 예술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작품에 대한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목표3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본연적 역할을 하는 것,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략과제5 ‘기관운영체계 혁신’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자율운영협약서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예술현장과 국민이 수립과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민주적 합의구조를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과제2는 진흥기금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이라든지 법 제도 마련이라든지 신규 재원 마련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해서 총량을 늘려가겠다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세부과제3에서는 조직 역량과 관련된 사무처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처 조직구조 개편과 조직 문화 혁신을 비전체계에 맞춰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직 직위를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과제6입니다.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입니다.

세부과제1로는 “숙의민주주의 기반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잡았습니다.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 토론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위원회가 ‘예술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한 지원체계나 인력 같은 것 등을 배치해서 민주주의적인 토론회에 따른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부과제2에서는 현장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 집단 지성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정책과 지원사업의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을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예술 현장 아고라>를 운영하고 정책혁신 캠프 같은 것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토론과 의결을 거치고 나면 세부 사업과제들의 시행과제들을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담기는 어려워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향후 변화 방향까지 담아서 비전안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 설립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비전을 발표해 왔죠. 지금 쓰고 있는 비전체계가 오래돼서 비전체계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배경 등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변곡점을 만들어서 현장예술계의 예술지원에 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아르코 중장기전략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아르코비전2030’이니만큼 시간을 쓰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살펴봐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 해 주시면 배석한 본부장 이하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앞의 경과를 보시면 1년 전부터 비전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포장하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요. 중장기 비전체계로서는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행과제와 방향 등을 하겠다고 해서 7월에 저희가 비전TF를 만들고 내·외부 토론 같은 것을 거치는 과정을 통한 내용이 오늘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생활예술에 관한 연구자로서 예술위원회가 생활예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른바 전문예술,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아래에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딱 생활예술을 표현하는 해외의 용어죠. 그것이 들어오면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고민모색, 그러니까 창조와 향유 모두를 지원하고 전문예술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예술까지도 포괄하겠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넣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연계방식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지원기관들이 세분화 되는 추세라서 그 연계방식은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문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미션인가에 대해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갔다가 왔는데 독립예술, 독립출판 등 창작과 향유에 대한 이분법이 깨져나가는 상황을 봤습니다. 매개역할을 잘 하면 이런 것이 해소되겠다고 해서 전략목표 두 번째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기관 간 협력체계는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파트너십 구도도 만들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아시겠지만 생활예술에 지원하는 것은 결국 예술의 향유층을 넓혀서 전문예술의 생태계가 훨씬 더 풍성해 지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생활예술의 접근, 예술위원회의 생활예술에 대한 접근의 측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대한민국의 전문예술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들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문화, 생활예술 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생활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예술인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향유가 되어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생활문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과 지원하는 체계가 무너져 가다보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기관에서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까지 그런 쪽에 확장하게 되면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자료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할 수 있는 세부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쳐다볼 때 변화를 느끼고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잘못 잡아주면, 대중예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확장이 돼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계획을 짤 때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받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세부내용에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봉 위원

- 생활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꽃꽂이나 다도나 서예 등 생활 속에서 부분이 생활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구분은 모두를 위한 예술을 지향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은 아닌 부분들이고,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은 지역문화진흥원이 출범을 해서 그쪽의 사업미션이 되어 지고 있어요.

저는 생활예술, 전문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굳이 정책의 대상과 타깃을 명확히 한다면 전문예술가 지원이 예술위의 미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중예술이나 생활문화라는 부분들이 확대되어 지면서 기본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할 기초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대학에서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미션을 문화예술생태계가 선순환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술인의 삶을 누리게 한다고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미션을 저희가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저희 설립목적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설립목적뿐만 아니라 정관이라서요. 저희가 미션을 논의해서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

이 걸리는데요. 미션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일단 우리 기관은 법적인 토대에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1차적인 설립목적의 근거는 법에 있는 것이고요. 문예진흥법 20조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을 1기 위원회 출범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정관에 포함시켰던 내용이고요. 설립목적도 법적 근거 하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비전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비전이야말로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방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전을 눈여겨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전략목표1에 보면 예술실험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험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느 과제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확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작환경 변화의 요소로 ‘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은 틀렸다고 봅니다. 우리 예술위원회가 비전이나 미션으로 갈 것은 실험성보다는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확장을 전략목표1로 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험성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예술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논의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세부과제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여기에서 예술의 실험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공모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과감한 실험성을 가진 예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예술가 중심으로 예술가가 하고 싶은 실험적인 예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실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나와서 마치 실험예술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 것은 토론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초예술, 순수예술 등 창의성, 즉 예술을 대체하는 말로 창의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3

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직접 거론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창의성 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간다고 곡해할 수가 있으니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아요. 즉시 대안을 내실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이 지적은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승정 위원

- 세부내용을 젊은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3대 전략목표 중에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2015년 때의 지향목표였고 이번 문화비전 2030을 만들 때는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사회문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전에 “세상을 바꾸는 예술” 보다는 요즘은 세상보다 개인의 삶이라든지 공동체 등 부분들의 가치가 부각되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윤주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삶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실 비전은 발표 직전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강윤주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 책은 동반검색어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영광입니다.

○나종영 위원

- 예술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성과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의 자유와 개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술가치 쪽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창작표현의 자유 수호 의지나 창의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코 비전2030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홍구 위원

- 여러 가지 좋은 과제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큰 문제는 안정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쪽에서든지 들어가서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정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나온 것 중에 비전은 ‘세상’보다 ‘삶’이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KO를 영문으로 하셨는데 뒤에는 한글로 쓰셨거든요. 굳이 영문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세부과제에서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가치 사회적 확산의 하위 내용으로 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상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예술창작 활동기반 강화’라는 이 부분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지원구조를 다변화 하고 재정립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공간을 만드는 정도인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비전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홍구 위원

- 큰 비전의 문구로서 예술이 ‘삶’이든 ‘세상’이든 바꾸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실패를 권하는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한다는 믿음을 축약해서 “세상을 바꾸는 예술”로 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맞지 않거든요. 이희경 위원님이나 김기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 “삶을 바꾸는 예술”이 더 적합합니다.

○조기숙 위원

- 일단 잘 만드셨고요. 종합적으로 그 전의 것보다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발전되었다고

됩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예술”이라고 해야지 뒤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하고 연결이 되고 앞뒤가 조직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가꾸는 ARKO”에 동의하고요. 실험성보다 창의성이 개념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기숙 위원

- 뒤에 있잖아요.

○강홍구 위원

- 사실 저는 그 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술을 가꾸는 ARKO”, 아르코가 예술을 가꾸니까?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비전은 오늘 확정하지 말고 다시 하시죠.

○강홍구 위원

- 확정은 하지 말고 다시 하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잠깐 논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체계를 오늘 의결하려고 했던 것은, 사업과제를 연계해서 배치해야 되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 핵심가치나 3대 전략목표, 15개 세부과제가 위원님들의 논의 속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나온 것인데요. 창작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환경개선과 관련해 왜 언급이 없느냐는 문제와, 창작이라고 하는 예술의 근본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과 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호의지, 창의성 문제 등 3가지로 압축이 되니까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체를 포괄하는 비전체계 등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마땅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결해 놓고 죽어도 못 바꾼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 나머지 핵심가치와 3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먼저 확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혁수 위원

- 저는 미래전략소위에서 관여했었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작

업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래전략소위원회에서 사무처 식구들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 한 것이 결국 비전과 전략 등은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가슴에 담고 일할 맛이 나는 목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직원들이 공람을 했냐?”, “회람을 했냐?”, “회람을 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 그 과정을 1~2년 동안 거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철학은 존중하지만 결국 목표지점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동안 직원들이 고민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꿈으로써 직원들이 1~2년 동안 아파하고 고민하고 담았던 내용들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 부분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얘기에서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비전전략체계니까 현실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단어 하나지만 되게 큰 변화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10페이지를 보니까 정관에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예술” 이라고 해도 우리 정관에서 나온 내용을 표현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단순히 ‘세상’ 을 ‘삶’ 으로 바뀌서 해결이 될 것인지?

○이희경 위원

- 우리 정관에 “우리 모두의 삶”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가꾸는 ARKO”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타당하냐는 문제는 또 남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비전체계는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을 여쭙겠는데요. 3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의성 제고 문제가 있고요. 창작표현의 자유 수호 의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환경

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코비전 2030에 가치로 담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을 반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전도 확정된 문구는 아닙니다. 사무처 워크숍에서 10개 정도의 비전을 써놓고 전문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사실 비전 등도 여러 가지 안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요. 오늘 논의를 해서 의결하려고 했던 것은 체계도입니다. 체계도를 의결해 주시면 그 다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면, 비전(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1차 협의를 하신 것으로 하고 나머지 3대 전략목표와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에 크게 지적을 하신 창작표현의 수호의지, 창의성제고, 창작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것을 담으라는 것을 위원회의 요구로 받아서 원안을 수정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좋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절차에 들어갈 텐데 반대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가 없으므로 안전번호 제 758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코중장기전략(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 759호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수사의뢰 대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처리 관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의결안건은 홍승욱 아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아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지난번 이사회 전체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의결 중에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하기 위한 의결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공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문제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로 지원 결정이 안 되어져 있어 오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알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1개 단체가 결과 발표 전 위원회 감사부로부터 보조금 부정사용 수사의뢰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 검토의견과 위원회 감사부의 사전 컨설팅 의견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지원의 결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이고요.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도 연수단원 지원사업 수행단체 중에서 현재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화해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고용전환대상자 월보수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월 100만 원 한도입니다.

선정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전환사실을 확인하고 적격심의를 통해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검토대상 단체는 ○입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7월 18일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 선정되었고요. 7월 26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심의결정내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7월 30일 감사부를 통해서 특정감사 추진결과 ○의 수사의뢰가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 5항 4호에 따라서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을 보시면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사업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 검토의견으로 심의 당시 사건 조사 및 소명절차 진행중으로 지원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된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되, 감사부 관련 의견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제1심 판결 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법률자문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보류에 대한 별도의 내부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사업의 입법취지를 볼 때 최소한 수사의뢰중인 사건의 제1심의 판결시까지 위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제외 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법률자문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에게 컨설팅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따라서 2019년 9월에 결정된 사안들을 갖고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결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이 건은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자문 검토의견이나 감사부의 컨설팅 의견은 애매모호하네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크게 보시면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있어서 이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거나 결정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리인 것이고요. 운영관리규정에 제외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에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합니까?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아닙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의 규정상으로는 문화부, 기재부 보조금 지침을 저희가 차용했습니다. 컨설팅 의뢰가 왔을 때 저희 규정과 상위법 그 다음에 상위 지침을 보니까 기재부, 문화부 지침의 원래 문구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규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심의위원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취지를 봤을 때 행정 집행 전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기소되거나 수사중인, 판결이 나기 전에 그 보조사업 단체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니까 법무법인 변호사가 말한 마지막 줄의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법률자문에서 한 것은 문체부, 기재부의 집행지침을 주지 않고 저희들 내부 지침만 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아 보고 저희 규정과 문화부, 기재부의 지침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내부규정에 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은 지원심의 규정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나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의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예진흥법상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종영 위원

- 19페이지 박스에 7월 18일 지원심의위원회하고 검토 후의 지원심의위원회가 다른 건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자료가 저희 내부규정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상위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유죄가 판결되었을 때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예 기각하는 것과 보류는 다른 문제인데, 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기봉 위원

- 2개월 정도라고 하면 저는 보류를 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기숙 위원

-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명료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이 사안은 2018년도 사업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업 중에 2가지, 3가지 사업이 걸려있는데페이백, 그러니까 단원들에게 돈을 줬는데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문제가 된다고 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령, 배임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 목적 외로 쓴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데 요건은 2가지입니다. “수사를 받은 단체로서 이로 인해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할까 말까의 부분은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100만 원 한도에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러면 정규직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거나 불확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을 때 더 나아가면 2개월이 아닙니다. 수사기간만 2개월이고 유죄 결정까지는 더 걸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결정된 상황인데 무죄로 되었을 경우 이 단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요. 결국 저희들이 지금 보류에 대한 디테일한 내부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내부에서는 결정이 났지만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있어서 내부규정에 있어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자문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결주문은 분명해야 하거든요. 지원심의를 통과해서 지원을 확정지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유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것입니다. 규정이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추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지원심의회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규직원을 잘못 채용해서 비리가 있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수사를 해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018년도에 해당 단체가 방방곡곡사업하고 순회사업에서 출연진들과 계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은 사례가 감사부를 통해서 적발이 되어서 그 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직 비리나 부정수급 자체가 결정난 상황은 없습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보류를 해 두고 유무죄 판결이 확실하게 나거나 하면 그때 지원을 완전히 철회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감사 의견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사부에서 수사의뢰를 할 때,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알고 수사를 의뢰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아니요. 그때 저희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종영 위원

-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하는데 보조금 관리규정을 안 보고 의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의뢰를 왜 하게 된 것인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페이백이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단체에서는페이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감사부에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김기용 감사부장

- 아니요. 페이지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개인이 썼다고 하면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법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게 2018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회 자체의 감사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가 전혀 무관하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보류는 해야 하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인건비거든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인건비라고 해도 그것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유죄로 판결나서 그것을 환수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류하고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이월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결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보류를 하시는 걸로 적용시한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연말까지 판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은 해야 되겠네요. 그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 주셔야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그때까지 판결이 안 나면 불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불용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강홍구 위원

-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해야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에서 지원신청을 한 인건비 금액이 520만 8,000원 정도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형식적으로 복잡한 것 같지만 나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별도의 사업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류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보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유보를 하되 연말까지 판결이 안 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연말까지 판결이 안 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관련해서 운영본부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 5월 달에 창작산실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유보가 된다고 하면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것은 정식 안건으로 올리셔야죠.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김기봉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별건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십시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보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보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 759호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수사의뢰 대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처리 관련해서는 2020년도 지원사업 설명회 때는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정확하게 책정해서 정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만큼은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청년예술가들을 포함해서 근본이 될 수 있는 공정보상체계라는 부분이 예술계의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회가 이 부분에 앞장서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의결안건 처리를 마치고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으로 총 8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오늘 보고안건은 8개가 상정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관련된 건이 6건이고 나머지 2건은 지원제도 관련해서 토론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개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안건을 보시고 구두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안된 안건을 정리하자면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6건인데요. 6건은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하고 지원심의제도개선TF 운영경과 보고와 2020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방안을 함께 모아서 보고 후에 토론토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TF보고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지원심의제도개선TF 운영경과 보고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원심의제도개선TF 운영경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위원장 지시사항으로 7월 18일에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총 8명이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빼고는 모두 여성분들입니다.

제254차 전체회의 때 토론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의제도 개선 검토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지원심의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상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했습니다. 총 22명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크게 지역재단에서 심의제도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현장예술인들은 공연예술, 시민예술, 문학시각예술에서 총 22명을 모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계의 분들보다 저희 심의 과정에 신청을 하셨고 각 심의과정 진행에 참가하셨고 선정된 경험도 있고 탈락된 분들로 대상을 한정해서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열릴 워크숍 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서면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9월 달 위원과 사무처의 워크숍. 9월 17일 저희가 마련한 2020년 심의제도개선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접근했던 심의과정에 대한 내용으로는 심의위원구성 단계와 심의진행방식, 심의결과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했습니다. 주요 가치가 있고요. 심의위원구성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심의위원구성 부분에서 개선방안은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을 정교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등록제로 심의위원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제, 심의총량제를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직원들의 형평성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사업별 심의위원 선정방식에 대해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책임심의위원회제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참여성 부분이 강화되는 사업이 있고 전문성 부분이 강화되는 사업이 뒤섞여 있는 만큼 저희가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서 다양하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지정절차 개선방식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피로우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섭외순위까지 100% 무작위추첨 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혜자층이 중심이 되는 향유사업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때 서로 나눠야 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단 후보를 기간을 두고 받는 심의위원 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보현황을 잘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장르별로 개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진행방식 부분에서는 크게 심의위원 대상에 따라서 심의 전에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의 특징이 인터뷰 목적으로 서류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너무 PT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워낙 심사의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불임자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2차 심의가 약간 권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수평적인 소통 방식에서 편안하게 신청자가 자기의 작품성이나 기획의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관객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의 다른 사업에도 이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심원제 시범 운영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어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공정평가심의담당자감독관이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벤치마킹을 할 사례가 있을 때 유관기관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관람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부분에서는 저희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발표 후에 어디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심의 후에 피드백을 강화해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선포럼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심의 이후에 심사과정에 대해서 신청자건 비신청자건 예비신청자든 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심의과정의 어려움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심의의 총평인데요. 떨어진 단체가 왜 떨어졌는지를 찾기 보다는 붙은 단체가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탈락한 단체가 읽었을 때 개별적인 시사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차 심의결과 공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 2차, 3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과만 알려주는 바람에 중간에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결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환류 강화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표 밑에 있는 지역협력 확대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역협력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지역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단에서 검증된 단체를 추천받아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무신청 지역협력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원을 지역재단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와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신청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행정서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리서치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국 설명회는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3군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현장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공고를 보고 지원신청서 양식을 클릭했을 때 불쾌감을 덜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대폭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시간상 한계는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도 가능한 부분을 꼭 개선해서 가능한 실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스안의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의진행 전 과정에 쌍방향 소통방식의 강화입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쌍방향을 절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서류심의결과 발표도 있고요. 현재는 선정된 분들께만 연락을 드리는데요.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하든지 모든 신청자들에게 결과 문자를 드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PT심의 시 말씀드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발표 안내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심의결과 발표 후 공유의 장 마련은 외부에서 저희 심의과정에 대해서 불신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낙선자포럼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유할 점이나 심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장을 사업별로 시범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성과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심의결과의 수용성을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보시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의제도 실험적 운영입니다.

일단 심의제도는 가능한 실험적으로 모두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피드백을 보고 향후 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심의위원회 운영은 과거에도 장르별로 책임심의위원이 계시면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장르별로, 특히 공연 같은 경우 너무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장르별 심의위원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과정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로 나와 있습니다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부분에서 책임심의위원제를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관객평가제 확대는 기존에 창작산실 쇼케이스에서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문학분야에서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이 일반인과 문학인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평단을 운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불필요한 서류심의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계형 지원 같은 경우 굳이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과감히 사업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지원제도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한번 정시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심의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사업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 대관료지원사업 등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해서 가능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청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회사업에 신나는 예술여행(청년예술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각각 순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액수가 부족하고 열정페이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재단이 신청해서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재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무신청지원제도 또는 지역과 사업을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TF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이고요. 지금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성평등예술지원소위에서도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오픈테이블에서 현장예술인들이 하신 말씀이 성 인지도가 심사위원들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상처를 받는 여성예술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심사에 임하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남성 심사위원이 여성예술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 여성한테도 역시 여성예술인으로서 상당히 상처 받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봐서는 심의위원 대상의 사전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그런 성 인지도를 감안한 오리엔테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심의위원이 신청자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죠?

○강윤주 위원

- 그렇죠. 인터뷰 과정에서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심의위원 사전교육을 하고 있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심의위원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잡지는 않고 일찍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현장소통소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성평등과 관련된 어진 교육은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잠깐 집어넣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현장소통소위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사 후 피드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낙선자모임이나 포럼 등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컴플레인 나왔을 때 수용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탈락했을 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렴하되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탈락한 사람의 소의를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감정을 한번 더 굽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에 배심원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그룹이나 참관인을 참관시켜서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좋겠는데 유관기관의 감사부 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은 마치 사전감사를 하거나 압박하거나 마치 권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해야지, 유관기관의 감사가 온다는 것은 마치 시대적인 것에 역행하는 느낌이라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2가지 말씀은 잘 들었고요. 탈락했을 때 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뭐가 힘들고 결정이 된 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 대상자는 낙선자가 아니라 후년의 예비신청자가 될 수도 있고 신청해서 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목을 낙선포럼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얼마 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했던 사례 중에 좋았던 것이 있는데요. 심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앉혀 놓고 심사하면서 이런 것은 힘들고 이런 것은 참신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전 컨설팅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질문하면서 사전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되게 중립적인 위치를 찾아보니까 생각을 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심의를 진행하는 유관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받아서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낙선포럼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희경 위원

- 어떤 방식으로 했던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1기 위원회를 할 때 다원예술소위에서 낙선포럼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사람을 어떻게 섭외해서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풀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타기관의 감사부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모니터링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전혀 상관없는 기관들의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유관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배심원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을

텐데요. 누구를 배심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회경 위원

- 심의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심의위원들이 다시 오시거나 시간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심의를 해 보면 심의날짜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평을 쓸 때는 보통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얘기들을 다채롭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총평을 하는 것과 ‘심의이야기’ 라고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의과정에 대한 소통방식에서 지지난 회의에서 강홍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계속 수도권, 서울에만 선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역의 편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등의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안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람들의 기획안이 공개되는 것은 어때냐?” 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떨어진 사람들도 선정된 것을 보면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관객평가제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이 갖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쇼케이스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특정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관객평가제와 일반관객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착이 잘 되게 하고요. 아까 강운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PT를 발표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심사위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훌륭하고 좋은 심사위원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정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보고를 받거든요. 저도 한번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공정하게 하실 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오실 수 있겠느냐? 심사위원들의 편의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봉 위원

- 지난번 현장소통소위에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80% 정도가 지원제도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된 부분들은 “요구

하는 서류들이 많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원항목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겠다.”, “이런 것이 지원양식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소위에서 한번 현장예술인들이 직접 공모양식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양식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도할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40쪽에 무신청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공모와 심의라고 하는 전형적인
틀 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디테일하게 검증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검증 받은 단체를 추
천” 이라고 할 때 잘못하면 ‘추천권력’ 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생각하고 실험적
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윤주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술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심사하는 랭킹을 준
것이잖아요?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에 따르면 일부 창작지원사업 말고 향유사업 같
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사무처의 TF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창작지원사업은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
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가되 일부 사업은 책임심의위원 제도로 가는 생각이거든요. 정리해 드리면 아직
까지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게 가능하다면 심사위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음악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을 모두 염두에 두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각각
의 분야에서 그 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
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타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심의에 가보면 계속 문제제기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
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곤란하니까 메타평가를 해서 사무처에
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랜덤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해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심의제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진화하고 일상적 제도를 위해서 계속 개선해

야 하는 내용인데요. 표준화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자체의 특성에서 지원의 방법론이 결정되면서 표준화해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2020년 심의제도를 바꾸겠다는 노력을 6기 위원회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논의수순이 심의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2차 안을 만들어서 현장토론회를 하고 23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지어 2020년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고스란히 6기 위원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논의수순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오늘은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순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강홍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보고(안)을 정리한대로 마저 보고를 하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토론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수익금 관리방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의 외부지적 사항에서 저희 수익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금이 페이퍼 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금이 일정정도 나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금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현 제도권 내에서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익금 관리 체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수익금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했는데요. 박스 안의 내용보다 저희는 보조금법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있고,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주요내용을 보면 ‘상당한 수익’이라는 상당성의 내용이 있어요. ‘상당한 수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가 아니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보시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을 보조사업비와 구분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의 26조를 보시면 ‘상당한 수익’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전에 교부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반납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지침의 혼란이 있는데요. 55페이지에 유관기관 대응현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같은 경우 무조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인지 상당성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5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일단 수익금 관리를 할 때 별도의 계좌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안내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이 생긴다고 무조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부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예상수익금을 적시해 주시면 지출란에 전체사업비로 들어가서 전체 수익과 지출금액이 등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중간에 수익이 생겼을 때도 역시 사업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지출과 수입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입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자부담, 국고보조금, 예상수익금이 있을 것입니다. 지출은 합계가 만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성에 대해서 해소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건 때문에 기재부에도 문의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도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문체부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상당성'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안내를 해야 하는데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에 이것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무리 저희가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교부신청 단계나 사업진행 단계에서 수익금이 나서 반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입란과 지출란을 동일하게 만들라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수익금을 0으로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단계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안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고민 끝에 만든 것인데요. 지원사업에서 수익발생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고요. 또 하나는 수익의 상당성을 저희 위원회에서 해석해서 올해 안내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부터 현장과 공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만들면서 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일단 해당 사업의 지원금이 총사업비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원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회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상당성 기준을 수입금 중 적어도 자신이 부담한 자부담 이외의 금액을 상당한 수익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 자부담과 남은 수익금의 보조금 비율로 정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1안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2안으로 결정하되 해당사업의 지원금을 3억으로 하는 경우가 적절할지? 1억 또는 2억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억 원으로 할 경우 저희 사업 중에 30~40여 개가 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이 추가를 해 주시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런데 3억 이상이라는 것은 축제만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은 공연본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상당한 수익’ 이라고 했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영주 부장님도 전체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자부담 검토 하위로 수익금 관리방안을 일차시켜서 간담회 때 재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보고만 가지고는 수익금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3억 원 이상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원사업 중에서 몇 개가 되지 않거든요. 내년도 보조사업의 자부담(안)을 성안하셔서 함께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가 시작되었으니까 오영주 본부장이 구두로 라도 보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동안 저희들이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면으로 떠오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금 처리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안으로는 예술계 쪽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쌍방향 수익이라는 것은 예술단체 쪽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을 넘는 수익을 기본적으로 삼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 워크숍 때 한번 더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18조 교부조건에만 ‘상당한 수익’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에는 ‘상당한 수익’ 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은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고 수익이 무조건 발생하면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몇 천 만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시장실패이론에 의해서 예술지원 근거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정책은 예술시장을 가지고 동시에 싣고 있어요. 양대성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식적으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미리 예측하여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1원을 지원하는데 10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향후 그 경우의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게 맞지 미리 상상하여 제도를 만들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별도의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해지고 관리한다는 게 만들어져야 현장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없이 수익금은 무조건 반납을 하라는 것은 또 다른 현장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정산과정을 편안하고 쉽게 하는 것이 중심인데요. 오늘 보고는 보조사업의 자부담 부분의 하위로 수익금을 배치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쉬웠을 텐데요. 이것을 떼어서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내부 워크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될 테니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이전까지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도 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소위원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에 앞서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토론안건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자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의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 목적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보조'라는 취지나 기재부 예산 과정에서 자부담 과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고요. 보조금법에 보조사업 연장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 자부담 여부를 저희 위원회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련 제도운영을 보시면 기재부의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2019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반영돼서 약 10억 정도가 창작지원사업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었는데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2016년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령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훈령이 폐지되면서 2017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10% 자부담 의무비율이 적용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관기관 운영현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개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부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깐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1안입니다. 폐지입니다. 0%입니다.

2안은 의무비율을 폐지는 하되 자부담 정도에 따라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의단계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같은 역량을 가진 단체가 신청했을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쪽의 행정평가로써 어느 정도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선정 후에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 조치도 사후에 별도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3안은 보조금법 취지를 고려해서 자부담은 유지하되 자부담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범위 부분을 보시면 개인지원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지원액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 의무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은 과감히 자부담을 없애고 1억 원 미만은 5%로 하고 1억 원 이상은 10%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애초에 10%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원금액에 따라서 차등비율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4안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자부담 의무비율을 폐지하면 예술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의 외부 평가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2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취지는 유지가 가능하면서 기재부 요구사항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공통 최저 의무비율의 폐지로 인해서 지원신청을 할 때 얼마를 자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술단체의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예술단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공통 요건으로 자부담 의무비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일부 단체에서는 있었습니다.

3안 같은 경우 예술계에서 당연히 지지할 것이고요. 기재부 등 외부 평가 대응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현행 유지는 예측가능성이나 일관성 부분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해서 없어진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왜 틀린 거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일부 국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도 없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없어진 것이고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부분은 없는데
요. 저희가 부담되는 것은 기재부 평가에서 없애면 그것에 따라서 기재부의 권고를 이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 삭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승정 위원

- 예술위를 통해서 예술가들한테 사업비가 가는데 어떤 예술인도 돈을 남겨서 살림에 보
탤거나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저
도 예술위원회에 들어온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항상 기재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데 아직까지 예술위에서 기재부를 설득시키지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기관평
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없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런 부분은 감수를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한테 찾아가
서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저는 1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요. 3안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액수로 어떤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좀 애매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의 폐지가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하
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니까 예술현장의 요구로 1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도저히 예술현장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어려움이 도래할 수 있다면 3안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자부담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무분별한 사업지원 예방”, “체계성 및 자생력 확보”
라는 말이 있던데요. 과연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2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책임성이나 자생력이 확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계속해서 공적자금에 종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단체가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예술생태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쭙 보는 건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부담으로 인한 좋은 효과는 없었는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1안에
찬성을 하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런 효과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사실 이 부분은 자부담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보조금 체계가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한 푼도 안내고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돈을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은 수혜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회가 선택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강운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다만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오래되었거든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금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6기 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안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전혀 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술대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부담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구분하고 사업의 분석을 하고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운주 위원

-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술위원회가 이제까지 지원한 데이터에 의해서 놀라울 정도로 아카이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2016년, 2017년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아왔고 어떤 효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성과가 정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초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일일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부담 관련된 것도 최소한의 근거, 이제까지 자부담을 받은 단체가 몇 개고 그 단체가 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자부담으로 인한 평가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부담을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많이 없었고 예술가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논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자부담 자체가 책임성이나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부담을 통한 성과는 저 개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선택하는 스탠스는 최소한의 외부 요건에 대응하면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최소 요건 10%. 지금 10%가 논리적으로 도출된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 위원님은 원칙을 얘기하셨고, 부장님은 현실성을 이야기 하신 겁니다. 다만, 관리가 명확하지 않고 논의의 결과가 없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종영 위원

- 기업에서 사업을 할 때 수익을 전제로 하고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액이나 1,000만 원으로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허위정산”, 당연히 허위정산을 하죠.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것은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액,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면서 자부담을 부담하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수익성이 나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고액이어야 합니다.

○강윤주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과는 결코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책임성 및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자부담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그게 성과인 것이죠.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일단 자부담이 만약 폐지되면 저희들도 행정차원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해도 되고 자부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자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각종 예산의 심의나 평가할 때 자부담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기관평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평가만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업비에 대한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관평가를 못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깎이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자부담 문제는 한번 토론을 해서 기초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운영지침에 적용해서 유지시켜 오고 있는 명분으로 그런 것을 넣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자부담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술생태계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는 예술위원회가 지금까지 기관의 운영에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예술인들의 현실로 돌아간다는 상징적 조치가 자부담 폐지라고 봅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이런저런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써보면 제일 황당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 “관객과 기대효과”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허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쓰다 보면 자부담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과 큰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생력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 문제가 있고 기재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산확보의 차원에서는 아까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안을 주장하되 제3안을 제2의 카드로 갖고 있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이 논의를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관련된 문제도 그냥 둘 수가 없고, 예술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부담을 폐지하든 유지하든 예술위원회 자체의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세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대한 방어적 논리와 예술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를 유지한 것인데, 만약 폐지를 하게 된다면 “생태계가 이렇게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공세적인 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이번에 논리를 만들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타계해야 할 분명한 책임감도 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전체 국가예산 기조에 따라서 자생력 등이 얘기되는데요. 확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술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문화예술은 상업성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는 기업성, 상업성이 강하고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구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작권이 확보되고요. 가령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 자부담이나 수익금 반환 등을 구별해서 하는데, 우리의 기초문화예술부분과 상업대중문화의 수익성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 몇 개를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위원회 워크숍 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꼭 보고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제가 나눠드린 문화예술 협치를 위한 현장토론회가 9월 6일 금요일 2시에 센터마크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지역협력소위 이승정 위원장님이 사무처와 같이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을 돌았습니다. 지방 이양에 따라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치라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승정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고 서울재단, 경기재단이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요. 김기봉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역문화진흥원장님과 전지협 의 사무국장님,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관 등이 참석하셔서 일종의 난상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재단, 기초재단에서 많이 참석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오시게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내일부터 문학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팜플릿을 보시라고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정대훈 부장이 간단하게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주간은 저희 문학분야의 주요 단체들이 준비위원회로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요. 매년 9월 첫째 주에 하게 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문학행사들이 열리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대학로에 오셔서 관람 내지는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이상으로 2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인사를 하고 가시죠.

(위원일동 박수)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이상으로 제 2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회의 종료)